

화성서부권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입주자격완화]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 09. 07.]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 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 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 공고 및 현장 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 09. 07.(월)입니다. 이는 입주자격과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9.07.)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금회 공고는 입주자격 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자격 요건	자격 완화 내용
① 주택 요건	무주택 세대구성원
② 소득 요건	적용 배제
③ 총자산 요건	적용 배제
④ 자동차 요건	4,542만원 이하(일반조건과 동일)

-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 재계약 기준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94조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재계약 가능하며, 재계약 요건 초과 시 아래와 같음
 - 소득·총자산 기준 1회 초과 시 재계약 허용(임대조건 할증 X)
 - 소득·총자산 기준 2회 초과 시 재계약 불가(단, 예비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 허용, 임대조건 할증 X)
- 이 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예를 들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9/21(월)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9/22(화) 또는 3순위 접수일인 9/23(수)에 접수 시 부적격 처리).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과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현장 방문 시 대행 접수(10:00~16:00까지, 12:00~13:00 접수불가) 가능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타 배점 관련 서류 등을 반드시 지참(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하셔야 합니다(서류 미지참 시 접수 불가).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 가능하므로 주소지 확인을 통해 계약안내문 수령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LH 국민임대 9월 통합정례 예비입주자 수도권 모집
주택관리번호	2026-000429

- 신청 시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어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낙첨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해당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종전 통장(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여 청약신청 불가 또는 심사에서 낙첨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어 정상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개인요청에 의한 청약신청취소는 불가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차량가액 기준 초과 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전화 문의는 장시간 접속 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사무소			신청문의 전화번호
사무소명	우편번호	주 소	
LH 경기남부지역본부 화성서부권주거복지지사	18371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노을6로 30, 병점메트로타워 6층(병점동 886-5)	1600-1004

1. 주택단지 개요(6개 단지)

단지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화성봉담 1단지(동화)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길 81-13	(휴먼시아 동화마을 1단지)	622	'07.11
화성봉담 2단지(동화)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새터길 89	(휴먼시아 동화마을 2단지)	915	'07.12
화성봉담 3단지(동화)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새터길 121	(휴먼시아 동화마을 3단지)	842	'07.10
화성봉담 4단지(동화)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새터길 118	(휴먼시아 동화마을 4단지)	480	'07.11
화성상리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삼천병마로 1256-10	(삼봉마을 주공아파트)	583	'07.10
남양뉴타운 A-1BL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중앙로 316	(LH9단지)	782	'16.12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하는 단지여건 및 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단지명	주택형	세대별 계약면적(m ²)					건설 호수	금회 모집 예비자 (205)	구조 및 난방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공용	주차장				
화성봉담 1단지	51	51.9200	22.0505	1.3516	10.3900	85.7121	467	28	혼합식 / 개별
	59	59.5700	25.2995	1.5508	11.9209	98.3412	155	4	
화성봉담 2단지	39	39.4800/ 39.8400	18.2924/ 18.4592	1.0430/ 1.0526	8.9581/ 9.0398	67.7735/ 68.3916	371	18	복도식 / 개별
	46	46.9600/ 46.8100	21.7582/ 21.6887	1.2406/ 1.2367	10.6553/ 10.6213	80.6141/ 80.3567	366	12	
화성봉담 3단지	39	39.4800/ 39.8400	16.4228/ 16.5726	1.1561/ 1.1667	8.1837/ 8.2584	65.2426/ 65.8377	354	12	혼합식 / 개별
	46	46.9600/ 46.8100	19.5344/ 19.4720	1.3752/ 1.3708	9.7343/ 9.7032	77.6039/ 77.3560	372	22	
	59	59.5700	24.7799	1.7445	12.3482	98.4426	116	6	
화성봉담 4단지	51	51.9200/ 51.7000	20.8269/ 20.7387	1.3479/ 1.3422	7.7520/ 7.7191	81.8468/ 81.5000	352	16	혼합식 / 개별
	59	59.5700	23.8956	1.5465	8.8942	93.9063	128	8	
화성상리	36	36.7200	14.9259	1.3786	10.8979	63.9224	196	8	혼합식 / 개별
	46/48	46.9600/ 48.3500	19.0883/ 19.6533	1.7631/ 1.8153	13.9369/ 14.3495	81.7483/ 84.1681	170	2	
	51	51.8600/ 51.9500	21.0800/ 21.1166	1.9471/ 1.9504	15.3912/ 15.4179	90.2783/ 90.4349	217	15	
남양뉴타운 A-1BL(9단지)	26	26.9000/ 26.9900	14.6449/ 14.6939	1.5104/ 1.5155	11.5520/ 11.5906	54.6073/ 54.7900	232	36	복도식 / 지역
	46	46.9200	25.5442	2.6346	20.1495	95.2483	264	18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가 있을 수 있으며,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그 다음으로 예비 순번이 부여됩니다.
- 단지 및 주택형별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주택형별 평면도(구조)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 샤시창을 자주 개방해주셔야 합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 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3. 임대조건(2026.09월)

단지명	주택형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원)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5%)	잔금(95%)				
화성봉담 1단지	51	27,222,000	1,361,100	25,860,900	226,370	+ 26,000,000	53,222,000	96,370
						- 19,000,000	8,222,000	281,780
	59	34,725,000	1,736,250	32,988,750	288,910	+ 33,000,000	67,725,000	123,910
						- 25,000,000	9,725,000	361,820
화성봉담 2단지	39	15,277,000	763,850	14,513,150	127,760	+ 13,000,000	28,277,000	62,760
						- 11,000,000	4,277,000	159,840
	46	22,222,000	1,111,100	21,110,900	193,070	+ 22,000,000	44,222,000	83,070
						- 16,000,000	6,222,000	239,730
화성봉담 3단지	39	15,265,000	763,250	14,501,750	127,660	+ 12,000,000	27,265,000	67,660
						- 11,000,000	4,265,000	159,740
	46	22,204,000	1,110,200	21,093,800	192,900	+ 22,000,000	44,204,000	82,900
						- 15,000,000	7,204,000	236,650
	59	34,699,000	1,734,950	32,964,050	288,680	+ 33,000,000	67,699,000	123,680
						- 25,000,000	9,699,000	361,590
화성봉담 4단지	51	27,222,000	1,361,100	25,860,900	226,370	+ 26,000,000	53,222,000	96,370
						- 19,000,000	8,222,000	281,780
	59	34,725,000	1,736,250	32,988,750	288,910	+ 33,000,000	67,725,000	123,910
						- 25,000,000	9,725,000	361,820
화성상리	36	12,905,000	645,250	12,259,750	109,630	+ 9,000,000	21,905,000	64,630
						- 9,000,000	3,905,000	135,880
	46/48	21,649,000	1,082,450	20,566,550	180,420	+ 21,000,000	42,649,000	75,420
						- 15,000,000	6,649,000	224,170
	51	26,092,000	1,304,600	24,787,400	216,490	+ 25,000,000	51,092,000	91,490
						- 18,000,000	8,092,000	268,990
남양뉴타운 A-1BL(9단지)	26	15,042,000	752,100	14,289,900	158,270	+ 18,000,000	33,042,000	68,270
						- 10,000,000	5,042,000	187,430
	46	43,781,000	2,189,050	41,591,950	290,750	+ 33,000,000	76,781,000	125,750
						- 33,000,000	10,781,000	387,000

- 위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2026.09.07.)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 사항으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9.0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금회 모집은 완화모집으로 소득 및 총자산요건 적용 배제)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하는 사람 모두가 무주택자인 세대의 구성원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table border="1" data-bbox="231 1008 1452 1478"> <thead> <tr> <th>세대구성원</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 신청자</td><td></td></tr> <tr> <td>• 신청자의 배우자</td><td>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td></tr> <tr> <td>•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td><td rowspan="2">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 <tr> <td>•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tr> <tr> <td>•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td>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 </tbody> </table>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합니다. <table border="1" data-bbox="255 1545 1476 1825"> <tbody> <tr> <td>외국인 배우자</td><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td></tr> <tr> <td>외국인 직계존·비속</td><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td></tr> <tr> <td>태아</td><td>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제외</td></tr> </tbody> </table>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하여 신청하고, 향후 당첨 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를 포함하여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제외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제외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공급신청 시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중복입주로 간주하여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기준	금회 모집공고 시 소득요건(완화)
		1인 가구	90%	3,432,027원 이하	소득요건 배제
		2인 가구	80%	4,693,016원 이하	
		3인 가구	70%	5,717,900원 이하	
		4인 가구		6,161,541원 이하	
		5인 가구		6,528,890원 이하	
		6인 가구		6,934,384원 이하	
		7인 가구		7,339,879원 이하	
		8인 가구		7,745,373원 이하	
자산	총자산가액	총자산요건 배제(단, 자동차가액은 완화하지 않음)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금회 공급 시 자격완화 부분 검증제외, 1회차 갱신계약부터 적용)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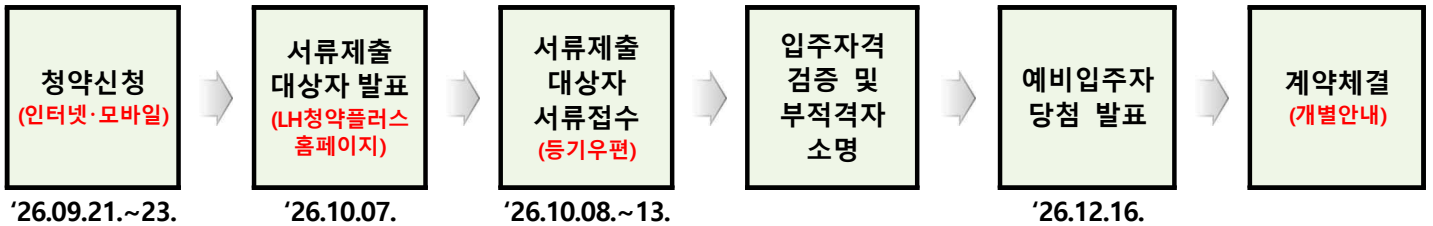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확인서의 농업인이 동일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입주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5. 선정기준

■ 선정절차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 주택)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모집공고일(2026.09.07.) 현재 경기도 화성시 에 거주하는 자(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② 2순위 : 모집공고일(2026.09.07.) 현재 경기도 수원, 오산, 용인, 안산, 평택시 에 거주하는 자(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③ 3순위 : 모집공고일(2026.09.07.) 현재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경쟁 발생 시 추첨으로 선정	
※ 본인의 순위를 잘못 알고 신청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신청 전 반드시 순위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은 50㎡미만 주택 접수 순위와는 무관하나 배점 산정 시 인정 회차에 따른 가점이 있습니다.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이상 주택)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봄	
* 청약납입횟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할 때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경쟁 발생 시 추첨으로 선정	
※ 본인의 순위를 잘못 알고 신청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신청 전 반드시 금회 모집의 주택관리번호를 이용해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기준(일반)

배 점 항 목	배 점 기 준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화성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5년 이상 : 3점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변동일 기준으로 화성시로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2026.09.07.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바. 61회 이상 : 6점
③ 미성년자녀수 (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 포함) * 만 19세 미만(2007.09.08. 이후 출생자녀)	가. 2자녀 : 2점 / 나. 3자녀 이상 : 3점
④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가.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3점 ※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 나.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3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하거나 '혼인한 배우자'가 '신청 시 기재한 배우자'와 불일치할 경우 계약 해제 가능하다.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태아포함) : 3점 라. 유자녀혼인가구(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혼인가구, 태아포함) : 3점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 세대 (동일단지에 한함)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전혼자녀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가 신청자인 경우 : 각 3점 ※ 배우자의 부모 포함 ※ 부모(자녀)가 이미 거주 중인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자녀(부모)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별개 세대로 한 단지를 각각 신청하는 경우, 한 단지 내에서 부모 자녀가 같이 거주하다 한 세대가 동일 단지를 신청하고 입주 시 세대분리하는 경우 포함 ※ 가산점 부여는 신청한 2세대 모두 당첨 시에만 부여하며, 한 세대라도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산점 미부여
⑥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 3점 *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고 영구 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으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3점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중전 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 3점

⑦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일은 제외)
-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 (예를 들면 '22.5.1일 국민임대주택 최초계약 후 입주, '23.3.1일 명의변경, '23.4.1일 국민임대주택 재신청 시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1년 이내이므로 -5점 적용, 만약 '23.5.3일 신청한다면 1년 초과하였으므로 -3점 적용)

※ 단,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 배제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페이지(applyhome.co.kr)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로 확인하며, 이혼 및 재혼으로 인한 전혼자녀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6. 모집일정

■ 순위별 모집일정

신청 순위	주택 유형	신청접수 LH청약플러스 (모바일/인터넷)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일시	서류제출 장소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1순위	전용 50㎡ 미만	화성시 거주자	2026.09.21.(월) 10:00~17:00	2026.10.07.(수) 14:00 이후 (확인방법)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조회	2026.10.08.(목) ~ 2026.10.13.(화) (서류제출방법) 등기우편	화성시 병점구 병점노을6로 30, LH 화성서부권 주거복지지사 국민임대 담당자 앞 ※ 2026.10.13.(화) 소인분까지 유효 ※ 일반우편·택배 접수 불가	2026.12.16.(수) 14:00 이후 (확인방법)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 명단' 조회 또는 ARS(☎1661-7700)
	전용 50㎡ 이상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자					
2순위	전용 50㎡ 미만	화성시 인접지역 거주자	2026.09.22.(화) 10:00~17:00				
	전용 50㎡ 이상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자					
3순위	1순위·2순위가 아닌 자		2026.09.23.(수) 10:00~17: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예비입주자 발표는 청약순위 확인 및 서류검증 소요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LH청약플러스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신청순위에 해당하는 날짜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금회 모집 입주자수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19:00 이후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확인방법)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청약] 메뉴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약 1.5~2배수를 선정하며, 자격검증 후 적격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낙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8. 제출서류]를 참고하시어 **서류제출일(2026.10.08.~10.13.)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등기우편을 보내실 때 봉투 겉면에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일반우편 및 택배 불가). (서류 미제출이나 누락으로 인한 낙첨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유선 확인은 불가하오니 우체국 홈페이지 배송조회 혹은 우체국 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 방문 시 대행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 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타 배점 관련 서류 등([8. 제출서류] 참고)을 반드시 지참하시어 LH 화성서부권주거복지지사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지참 시 접수가 불가합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인증서 준비 → LH 청약플러스 접속 → 인터넷 신청 → 신청완료

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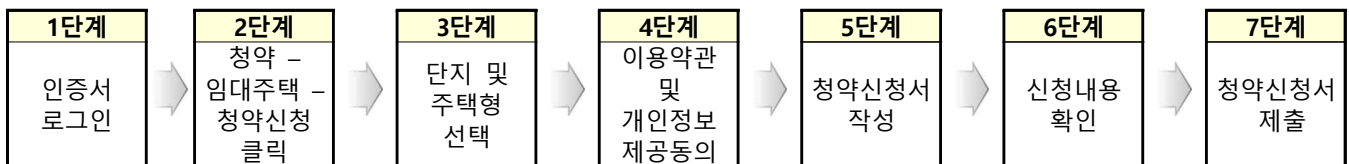
- 인터넷 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청약플러스 접속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인증서 로그인 →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③ 인터넷 신청



■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청약플러스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모집일정을 확인([6. 모집일정]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터넷 신청 가능 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 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당일 마감 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 마감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 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니라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낙첨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주택] 주택명 : LH 국민임대 9월 통합정례 예비입주자 수도권 모집
관리번호 : 2026-000429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발급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applyhome.co.kr)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종류 선택 → 공동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 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인터넷이 불가능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확인

- 거주 지역 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 시 공고일 기준 해당 단지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 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 신청은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착오 입력 및 누락 등에 따른 낙첨,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낙첨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내용을 입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신청자께서는 신청 이후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14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서류제출 기한 내 서류를 등기우편 및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 청약플러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 신청 → 신청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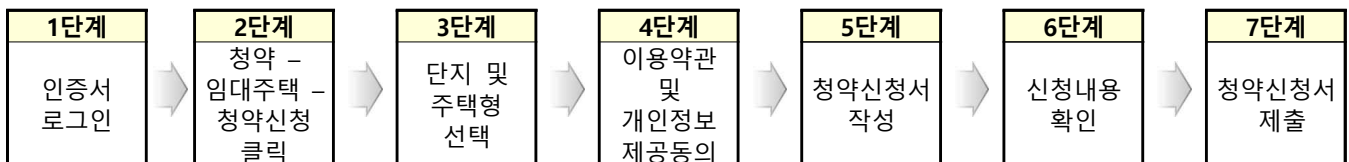
① 스마트폰에 'LH 청약플러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LH 청약플러스' 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 이용 고객 : 앱스토어에서 어플 다운로드
 - ANDROID 이용 고객 : Google Play에서 어플 다운로드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발급)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설치되어 있거나 간편인증을 통해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플러스 → 고객센터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모바일 신청(모든 과정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



■ 유의사항

- 모바일 신청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모바일 신청이 가능한지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신청이 시스템 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신청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PC로 청약신청 후 스마트기기로 수정 및 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기기로 청약신청 후 PC로 수정 및 취소도 가능합니다.
- 모바일 신청 시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신청 과정에서 데이터 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방문 신청방법(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만 해당)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에서 대행접수를 진행하며, 운영시간은 10:00~16:00입니다(점심시간 12-13시 접수 불가).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신청순위별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6. 모집일정] 참고).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타 배점 관련 서류 등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지참 시 접수가 불가합니다([8. 제출서류] 참고).
- 자격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순위확인서 필수), 도로명 주소, 중증 장애인 해당여부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미비서류가 있을 경우 서류제출 기한 내 미비서류만 추가로 제출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노을로 30,
병점메트로타워 6층 (병점동 886-5번지)

■ 오시는 길

(지하철) 병점역 1호선 2·3번 출구 맞은 편
(육교에서 약 100m 도보 이동)

■ 주 차

건물 내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길 건너편
야외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8. 제출서류[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9.07.)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제출(일반우편 및 택배 불가)

* 서류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9.07.)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관 문의 후 미리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예시) 123456-1234567 (O), 123456-1***** (X)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현장방문 신청자 제출서류

구 분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만 인정)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위임장(공사양식, 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발급분),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공사양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	--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비 고	발급처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작성방법) 내용 확인 후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 신청 및 접수 불가	LH청약플러스 별지
입주자격 완화 협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작성방법) 공고 시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 신청 및 접수 불가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발급) (주소변동사항 포함)	-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의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각각 제출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해당자만 제출> ※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외국인 배우자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배점을 받고자 할 경우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로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이외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발급) (주소변동사항 포함)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반드시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 거주자로 주민등록표등본상 화성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제출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해당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거소사실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행정복지센터
	임신진단서 / 입양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태아 또는 입양자가 있어 배점(미성년자녀수, 부양가족수 등)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혹은 입양관계증명서 제출	의료기관 / 행정복지센터
	혼인관계서류	<해당자만 제출> • 신혼부부 또는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배점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공사양식),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행정복지센터 / LH청약플러스
	감점 적용 배제 관련 서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 출산/사망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출생/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노부모 부양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행정복지센터

■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5. 선정기준]의 사회취약계층 해당자만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세대원 포함)	수급자증명서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확인서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국가보훈부 지방보훈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성평등가족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사회보장급여통지서에 첨부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서” (신청 후 수령까지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 요망)	행정복지센터
	아동복지시설에 퇴소하는 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입증 서류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건강보험공단 /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차상위초과부가급여 제외)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중위소득 50% 이하자로서 신청 후 발급에 60일 소요되므로 미리 확인 요망) 등 차상위계층 입증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중 청약저축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계약사실확인서 - 청약통장 사본	

9. 당첨 발표 및 계약 안내

■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 2026.12.16.(수) 14:00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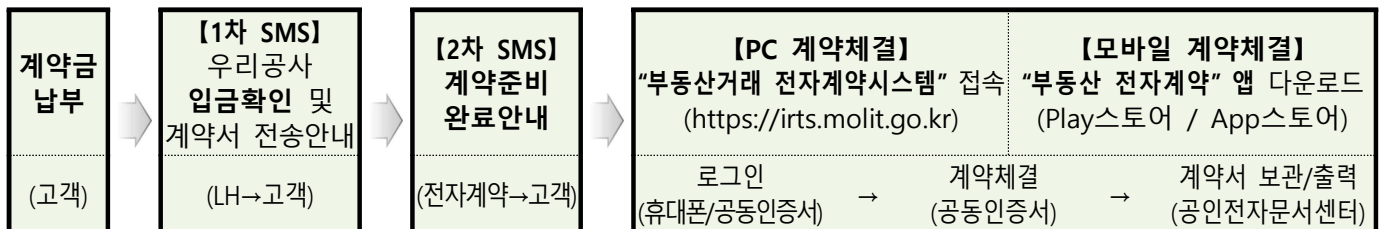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조회방법) LH청약플러스 → '청약' 클릭 → '당첨/낙찰자 명단' 클릭

■ 계약안내(전자계약 또는 현장계약 중 선택)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 발표 후 공가 현황에 따라 순번대로 개별 통보하며, 실제 계약(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순번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따라 변경되는 순번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회방법) LH청약플러스 → 고객센터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 주택의 동호수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임대차계약(계약절차 및 입금계좌 등) 및 입주안내 등 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LH 화성서부권주거복지지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 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별 안내 예정).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제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전자계약 [계약기간 : 추후 개별안내]

[계약체결 절차]



- 계약금 입금 후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전자계약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상세 절차는 추후 개별 안내 예정)
-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1차 SMS」은 계약기간 중 업무시간(평일 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1차 SMS」은 청약신청 시 "SMS 수신동의"한 신청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계약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계약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 현장계약 [계약기간 : 추후 개별안내]

- 계약금 입금 후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기간 내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현장계약장소 : LH 화성서부권주거복지지사(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노을로 30, 병점메트로타워 6층)

구 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본인 및 대리인 계약 시 모두 지참)	①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 운전면허증에 한함 ② 계약자 도장(본인 계약 시 서명 가능) ③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통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공통서류 ②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③ 계약자와의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만 인정)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공통서류 ②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③ (인감증명방식) 계약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위임장(공사양식, 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계약자의 인감도장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본인서명방식) 계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발급분), 계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공사양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항목	유의사항						
자격 완화 사항	• 입주 자격 완화 사항 <table border="1"> <tr> <td>소 득 기 준</td><td>적용 배제</td></tr> <tr> <td>총 자산 기 준</td><td>적용 배제</td></tr> <tr> <td>자동차 기 준</td><td>4,542만원 이하</td></tr> </table> ※ 자격완화여부와 관계 없이 동일한 임대조건이 적용되나, 자격완화 계약자는 갱신계약이 일부 제한됩니다.	소 득 기 준	적용 배제	총 자산 기 준	적용 배제	자동차 기 준	4,542만원 이하
소 득 기 준	적용 배제						
총 자산 기 준	적용 배제						
자동차 기 준	4,542만원 이하						
임대조건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비율은 현재 6%(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시 3.5%)이나, 향후 전환비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 입주자격(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 • 금번 공고로 소득 및 자산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 한 차례(1회차)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2회차)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1회차 갱신 시 소득, 자산 초과할 경우에도 임대조건 할증 없이 재계약 가능하며, 2회차에는 예비자가 없을 경우에만 할증 없이 재계약 허용합니다(3회차부터는 [일반조건] 충족 시 갱신 가능).						

	재계약 허용 여부																	
	기준 1회 초과자의 재계약	기준 2회 초과자의 재계약																
	소득·총자산 요건 미충족 시에도 재계약 허용 (임대조건 할증 X)	예비자가 없는 경우 소득·총자산 요건 미충족 시에도 재계약 허용 (임대조건 할증 X)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자 포함) 및 계약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부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소명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며, 소명기간 내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모바일 신청 및 현장방문 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등 판정 기준은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는 낙점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안내	- 예비입주자 명단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계약절차 및 입금계좌 등)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LH 화성서부권주거복지지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입주안내	- 입주 시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계약서 및 잔금 납부 등을 확인하고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하는 경우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잔금 연체료, 임대료 및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개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전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을 통해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계약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곳의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공급·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후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습니다.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차량 등록이 원칙입니다.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세대별 차량등록 대수를 상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과된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단지 내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 소유의 차량은 주차 및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원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등록은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별 주차대수 현황 <table><tr><th>단 지</th><th>주차대수</th><th>단 지</th><th>주차대수</th></tr><tr><td>화성봉담 1단지</td><td>534대</td><td>화성봉담 4단지</td><td>424대</td></tr><tr><td>화성봉담 2단지</td><td>786대</td><td>화성상리</td><td>511대</td></tr><tr><td>화성봉담 3단지</td><td>729대</td><td>남양뉴타운 A-1BL(9단지)</td><td>759대</td></tr></table>		단 지	주차대수	단 지	주차대수	화성봉담 1단지	534대	화성봉담 4단지	424대	화성봉담 2단지	786대	화성상리	511대	화성봉담 3단지	729대	남양뉴타운 A-1BL(9단지)	759대
단 지	주차대수	단 지	주차대수															
화성봉담 1단지	534대	화성봉담 4단지	424대															
화성봉담 2단지	786대	화성상리	511대															
화성봉담 3단지	729대	남양뉴타운 A-1BL(9단지)	759대															

기타사항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팜플릿(리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단지배치도, 조감도, 투시도, 세대평면도 등 각종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오류·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인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이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일 때 신청자 본인 포함 세대구성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중증장애인,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있는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도 불구하고 일반세대에 앞서 우선 입주할 수 있으니, 희망하는 경우 신청 시 우선입주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이 없는 경우 순번에 따라 계약 후 장애인 편의시설 요청 시 검토하여 설치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설치해드릴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를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불법개조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 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10.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자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 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도 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3급 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고령자(만 65세이상), 3급 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 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좌식 샤워 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 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 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 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 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좌변기 옆 여유공간	휠체어 이용자 등 좌변기 옆 75cm 이상 여유공간 확보	3급 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 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고령자(만 65세이상), 3급 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가스밸브 높이 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비디오폰 높이 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비디오폰 점자 표지	비디오폰(월패드) 단축버튼 점자표지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3급 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경보기	세대 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조명 밝기 조정	거실 조명 밝기(600~900lux)	
침실	조명 밝기 고정	침실 조명 밝기(300~400lux)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기 입주 단지이므로 일부 설치 항목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단지별로 설치 항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편의시설 유의사항

- 신청 주택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개별 계약체결기간 내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호훈보상대상자 확인서, 5·18 민주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 확인서 등

11. 공통 유의사항

12. 주택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3.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삭제 <2022. 9. 6.>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척추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마.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5)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생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아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 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 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5)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또는 기면증으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경우로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에 백반증(白斑症)이 있는 사람
- 3) 노출된 안면부의 3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두 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7. 장애 정도 구분의 하한 기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준으로 한다.

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총자산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부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예치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15. 문의처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당첨자 ARS ☎1661-7700
-----	---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9.0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화성서부권주거복지지사